

6. 제11장(경쟁)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11장
공정한 경쟁 환경과 소비자 보호

제1절
경쟁과 소비자 보호

제11.1조
경쟁법과 당국

1. 각 당사국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국가 경쟁법을 유지한다.
 - 가. 카르텔 협정을 포함한 기업 간의 반경쟁적 합의를 금지하는 국가 경쟁법
 - 나. 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의 반경쟁적 관행을 금지하는 국가 경쟁법, 그리고
 - 다. 중대한 반경쟁적 효과를 갖는 합병을 다루는 국가 경쟁법
2. 각 당사국은 기업의 국적 또는 정부 소유와 관계없이, 자국 영역 내의 모든 상업적 활동에 자국의 국가 경쟁법을 적용한다. 이는 당사국이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반경쟁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자국 국경 밖의 상업적 활동에 자국의 국가 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 경쟁법 적용으로부터의 특정한 면제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면제는 투명해야 하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정책상의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 경쟁법 집행을 담당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가 경쟁 당

국을 유지한다.

5. 각 당사국은 국적 또는 정부 소유를 근거로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국의 국가 경쟁법을 집행한다.

제11.2조 절차적 공정성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 경쟁법에 따라 어떠한 인에게 제재 또는 구제를 부과하기 전에, 그 인에게 다음을 부여할 것을 보장한다.

가. 국가 경쟁 당국의 경쟁 우려사항에 관한 정보

나. 법적 대리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 그리고

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 다만, 당사국은 임시 제재 또는 구제를 부과한 후 합리적인 기간 안에 그 인이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 경쟁법 조사 수행 시 따르는 서면 절차를 유지한다. 이러한 조사가 확정적인 마감시한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닌 경우, 각 당사국의 국가 경쟁 당국은 합리적인 기한 안에 조사를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 경쟁법에 따라 수행되는 절차 및 그에 따른 제재와 구제의 결정에 적용되는 절차 및 증거 규칙을 유지한다.

4.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국가 경쟁법에 따라 제재 또는 구제의 부과 대상이 되는 인에게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설치된 법원 또는 그 밖의 독립적인 재판소에서 그 제재 또는 구제의 재심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 각 당사국은 서류 중이거나 진행 중인 조사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밝히는 공고에서 어

떠한 인이 실제로 그 당사국의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문안을 회피하도록 보장한다. 이는 그 당사국의 국가 경쟁 당국이 잠정적이고 논리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6.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 경쟁 당국이 자국의 법에 따라 비밀 또는 특권으로 보호되는 정보를 조사 중에 취득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법적 예외를 조건으로 그러한 비밀 또는 특권이 보존되도록 보장한다.

7.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국가 경쟁 당국이 자국의 국가 경쟁법에 따라 수행되는 조사를 받는 인에게, 조사 중에 발생하는 중요한 법적, 사실적 또는 절차적 문제에 대하여 그러한 국가 경쟁당국과 협의할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8.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에 따라 민사 또는 행정 사안에 대하여 내려진 모든 최종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그러한 결정이 기초하고 있는 사실 조사 결과와 법적 결론을 기술하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최종 결정에 담긴 비밀정보를 제외하고 그 최종 결정을 공개한다.

제11.3조

사적 제소권

1. 이 조의 목적상, "사적 제소권"이란 어떠한 인이 경쟁법 위반으로 초래된 그 인의 사업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법원 또는 그 밖의 독립적인 재판소로부터 명령적, 금전적 또는 그 밖의 구제를 포함한 시정을 구할 권리를 말한다.

2. 각 당사국은 사적 제소권이 경쟁법의 공적인 집행을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인정하며, 독립적으로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 당국의 위반 판정 후에도 자국 경쟁법에 따라 사적 제소권을 규정하는 조치를 유지한다.

3. 각 당사국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권리가 자국인이 이용 가능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자국이 창설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제11.4조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정책 및 집행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소비자에게 피해 또는 잠재적 피해를 불러오는 오도적, 기만적, 사기적 또는 불공정한 상업적 관행을 금지하는 소비자 보호법과 규정을 유지한다. 그러한 관행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본질적 특성, 가격, 목적상 적합성, 수량 또는 원산지에 관한 허위 표시 또는 허위 주장

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의사 없이 공급에 대하여 광고

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의사 없이 공급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청구, 또는

라. 승인 없이 소비자의 금융, 전화 또는 그 밖의 계정에 청구하거나 그러한 계정에서 인출하는 행위

3. 각 당사국은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법적 권리를 제공하는 법과 규정을 유지하고, 이는 최소한 다음의 경우에 구제를 허용한다.

가. 상품의 품질이 수용 가능하지 않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다.

나. 상품이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다. 상품이 표시된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또는

라. 서비스가 합리적인 주의 또는 기술로 수행되지 않았다.

4.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와 거래하는 한쪽 당사국의 소비자 등을 위하여 소비자 피해구제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5.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를 포함한 분쟁 해결 제도가 소비자와 공급자 간 분쟁 해결을 촉진하는 데 유익함을 인정한다.

제11.5조

투명성

1. 양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 및 소비자 보호법과 집행 정책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하는 것의 가치를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공식 웹사이트 등에 다음을 공개하거나 공개되도록 요구한다.

가. 자국의 경쟁법 및 규정

나. 자국의 경쟁법에 대한 예외 및 면제

다. 자국 경쟁법의 운영 및 집행과 관련하여 발행된 지침 및 모든 규칙. 그러나 내부 운영 절차는 공개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라. 온라인 상업적 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위한 것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보호에 관한 정보.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가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과 기업이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3. 각 당사국은 기업이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자신들의 정책과 절차를 공표하도록 장려한다.

제2절
공기업

제11.6조
적용범위

1. 이 절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정부조달

나. 국가적 또는 세계적 경제 비상상황¹에 대응하여 일시적으로 취해진 조치로서, 공기업, 특별한 권리 또는 특혜를 부여받은 기업, 또는 지정 독점에 관한 조치

다.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라. 공기업, 특별한 권리 또는 특혜를 부여받은 기업, 또는 지정 독점으로서, 직전 3년 연속 회계연도 중 어느 한 해라도 해당 기업 또는 독점의 상업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연간 수입이 2억 특별인출권 미만인 경우

마. 당사국의 중앙은행 또는 통화 당국의 규제 또는 감독 활동, 또는 통화 및 관련 신용 정책과 환율 정책

바. 유가증권 또는 선물 거래소나 그 시장, 청산기관 또는 금융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 또는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그 밖의 조직이나 협회와 같은 비정부기관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금융 규제 기관의 규제 또는 감독 활동, 또는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상상황은 당사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양해된다.

사. 부실화되어가거나 부실화된 금융 서비스 공급자, 또는 주로 금융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는 그 밖의 부실화되어가거나 부실화된 기업의 정리를 목적으로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공기업 중 하나가 수행하는 활동

제11.7조

정의

이 절의 목적상,

상업적 활동이란 이윤 창출²을 지향하여 수행되며, 기업이 결정한 수량과 가격으로 관련 시장 내 소비자에게 판매될 상품의 생산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최종 결과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

상업적 고려란 가격, 품질, 가용성, 시장성, 운송 및 그 밖의 구매 또는 판매의 조건, 또는 관련 비즈니스나 산업에서 민간소유기업의 상업적 결정에 통상적으로 고려되는 그 밖의 요소를 말한다.

지정하다란 독점을 설립 또는 승인하거나 추가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독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 독점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지정된 민간소유 독점과 당사국이 지정하거나 지정한 모든 정부 독점을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신탁·파트너십·단독소유기업·합작투자·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정부 독점이란 당사국의 중앙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³되는 독점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영리 또는 원가회수를 기초로 운영되는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은 이윤 창출을 지향하여 수행되는 활동이 아니다.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소유지분을 통한 지배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일 수 있다.

을 말한다.

시장이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지리적 및 상업적 시장을 말한다.

독점이란 당사국 영역의 관련 시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 또는 구매자로 지정된, 컨소시엄 또는 정부기관을 포함한 실체를 말한다. 그러나, 배타적인 지식재산권을 부여 받은 실체는 그 부여만을 이유로 이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비차별적 대우란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규정된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말한다.

특별한 권리 또는 특혜란 특정 지역이나 제품시장 안에서 당사국이 제한된 수의 기업에 부여하는 권리 또는 특혜를 말하며, 그 효과는 동종의 상황 내 동일한 지역 또는 제품시장에서 그 밖의 기업이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희소 자원의 분배 시 객관적이고 비례적이며 비차별적인 기준을 통하여 제한된 수의 기업에 면허나 허가를 부여하는 것 그 자체로는 특별한 권리 또는 특혜가 아니다. 그리고

공기업이란 주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하며, 당사국이

- 가. 주식 자본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직접적으로 소유한다.
- 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의결권의 행사를 지배한다. 또는
- 다. 이사회 또는 그 밖에 상응하는 경영진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제11.8조

지정 독점

1. 각 당사국은 모든 지정 독점이 다음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 가. 그러한 독점이 당사국이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수입 또는 수출 면허의 부여, 상업적 거래의 승인이나, 쿼터·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의 부과와 같이 규제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항상, 이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

나. 관련 시장에서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⁴에서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행동할 것. 다만, 다호 또는 라호에 불합치하지 않는 지정 조건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관련 시장에서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에서, 적용대상투자,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제공할 것, 그리고

라.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공동 소유의 그 밖의 기업과의 거래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의 비독점 시장에서 적용대상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관행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데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지 않을 것

2.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지정 독점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1.9조

공기업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공기업이 다음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가. 그러한 공기업이 당사국이 자신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수용, 면허부여, 상업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1.8조의 “관련 시장에서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는 지정 독점 공급자의 경우에는 지정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를, 지정 독점 구매자의 경우에는 지정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지칭한다.

적 거래의 승인이나, 쿼터·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의 부과와 같이 규제적·행정적 또는 그 밖의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항상, 이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 그리고

나.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시 적용대상투자에 비차별적 대우를 부여할 것

2. 공기업과 특별한 권리 및 특혜를 부여받은 기업에 대하여,

가. 당사국은 제11.1조에 포함된 원칙에 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 당사국은 그러한 기업들이 자국의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다만, 이러한 원칙 및 경쟁법의 적용이 그 기업들에 맡겨진 특정 업무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때에 한정한다.

3.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공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거나, 기업에 특별한 권리 또는 배타적 권리를 위임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11.10조

가격차별

제11.8조 및 제11.9조는 가격차별이 수요 및 공급 조건의 고려와 같이 통상적인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독점 또는 공기업이 다른 시장에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 또는 동일한 시장 안에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11.11조

규제의 틀

1. 양 당사국은 특히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관련 국제 기준을 존중하고 최대한 잘 이용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이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규제 기관 또는 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기관이, 그러한 기관의 규제를 받는 기업 중 어떠한 기업으로부터도 독립적이며 그 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장하며, 공기업, 특별한 권리 또는 특혜를 부여받은 기업 및 지정 독점을 포함하여 그러한 기관의 규제를 받는 모든 기업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공평하게⁵ 행동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일관되고, 국적이나 정부 소유에 기초하여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국의 법을 공기업, 특별한 권리 또는 특혜를 부여받은 기업 및 지정 독점에 적용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수행된 상업적 활동에 기초하여 외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소유 지분을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에 대한 민사 청구에서 자국의 법원에 관할권을 제공한다.⁶ 이는 당사국이 외국정부가 소유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에 대한 유사한 청구의 관할권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국에게 그러한 청구의 관할권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1.12조

투명성

당사국이 1994년도 GATT 제17조제4항가호에 따라 제출한 통보의 맥락에서, 양 당사국 간 양자 무역에 대한 공기업의 영향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 요청을 직면했을 때, 통보 당사국은 비밀정보에 관한 1994년도 GATT 제17조제4항라호를 조건으로, 자국의 공기업이 이 협정의 관련 의무를 준수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요청에 대한 자국의 응답에서 가능한 최대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제 기관이 자신의 규제 기능을 공평하게 행사하는지는 그 규제 기관의 일반적인 양상이나 관행을 참조하여 평가된다.

⁶ 이 항은 당사국이 이 항에서 언급된 청구 외에, 외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에 대한 청구에서 자국 법원에 관할권을 제공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1.13조

검토 조항

양 당사국은 이 절에서 언급된 사안을 계속 검토한다.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5년마다 이 절의 이행에 대한 진전 상황을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제3절

보조금

제11.14조

원칙

양 당사국은 보조금이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 보조금에 의하여 야기된 경쟁의 왜곡을 경쟁법의 적용을 통하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구제하거나 제거하고, 그러한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합의한다.

제11.15조

적용범위

1. 이 절의 규정은 수산보조금,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보조금, 그리고 농업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그 밖의 보조금을 제외하고, 상품에 대한 보조금에 적용된다.
2. 보조금은 제11.16조에 따라 특정적인 경우이거나 제11.17조에 따라 특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이 절의 적용대상이 된다.
3. 양 당사국은 다자수준에서의 진전사항을 고려하여,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에 적용 가능한 규칙을 발전시키고,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제11.16조

정의

1. **보조금**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조제1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조치를 말한다.
2. 보조금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정적이다.

제11.17조

금지보조금^{7,8}

다음의 보조금은 특정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양 당사국 간 국제무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금지된다.⁹

- 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부채와 채무의 금액 또는 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떠한 제한 없이,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조제1항의 의미에서 특정기업의 부채 또는 채무를 부담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합의에 따라 부여되는 보조금, 그리고
- 나. 지급불능 또는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장기적인 생존 가능 상태로 합리적인 기간 안에 회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한 신뢰할 만한 구조조정 계획 없이, 그리고 지급불능 또는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구조조정 비용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기업을 구제 또는 구조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되는 보조금(대부 및 보증, 현금 무상교부, 자본 투입, 시장가격 미만의 자산 제공 또는 세금 감면 등). 이는 양 당사국이 실적이 부

⁷ 양 당사국은 이 조가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수령된 보조금에만 적용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⁸ 이 협정의 목적상,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조제1항나호 및 이에 부속된 각주 2에 규정된 객관적인 기준 또는 조건에 따라 부여되는 중소기업을 위한 보조금은 이 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⁹ 양 당사국 간 국제무역은 국내 및 수출시장 모두로 구성된다.

진한 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청산 계획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오로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금액에 한정된 대부 보증 또는 대부의 형태로 일시적 유동성 지원을 통하여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 호는 공공서비스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으로서 부여되는 보조금과 석탄산업에 부여되는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1.18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에서 부여되거나 유지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다음을 다른 쪽 당사국에 2년마다 통보한다.

가. 법적 근거

나. 보조금의 목적

다. 보조금의 형태

라. 보조금 금액 또는 보조금을 위한 예산액, 그리고

마. 보조금의 부문별 배분

2. 그러한 통보는 다른 쪽 당사국에 발송되거나 제1항에 명시된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에 공표되는 경우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은 보조금 계획과 특징적인 보조금에 대한 특별한 개별사례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양 당사국은 직업상 및 영업상의 비밀 요건에 의하여 부과되는 제한을 고려하여 이 정보를 교환한다.

제11.19조

WTO 협정과의 관계

이 절의 규정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WTO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무역구제를 적용하거나 분쟁해결을 제기하거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제11.20조

감시 및 검토

양 당사국은 이 절에서 언급된 사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사안을 제 15.1조(무역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무역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2년마다 이 절의 이행에 대한 진전 상황을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제4절

분야 전반에 걸친 공통 규정

제11.21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경쟁 및 소비자 보호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국의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당국 간 협력과 조정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당국을 통하여 경쟁 및 소비자 보호법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다.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쟁 및 소비자 보호법 집행과 관련된 자국의 활동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는 것

나. 이해를 증진하거나 경쟁 및 소비자 보호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

여 양 당사국 간 정보를 교환하는 것, 그리고

다. 경쟁 및 소비자 보호법 집행과 관련하여 동일하거나 관련된 우려를 제기하는 집행 조치 또는 조사를 조정하는 것

2. 양 당사국은 경쟁 및 소비자 보호 정책의 발전과 경쟁 및 소비자 보호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 협력 활동에 협력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 관심사안임을 인정한다. 기술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경쟁 및 소비자 보호 정책·법의 발전 및 이행에 관한 정보 교환

나. 경쟁 및 소비자 보호법·정책과 관련된 연구, 검토 및 조사의 공유, 그리고

다. 협력 및 지식 공유 심화를 위하여 정책 기관 또는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당국의 공무원 교류

3. 양 당사국은 국제적인 협력 및 조정, 그리고 OECD 경쟁 및 소비자정책 위원회, 국제 경쟁네트워크 및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를 포함한 다자기구의 활동이 경쟁 및 소비자 보호 정책 분야에서 중요함을 인정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모든 협력 및 조정은 각 당사국의 법 및 중요한 이익과 양립할 수 있는 한도에서, 그리고 양 당사국이 이용 가능한 자원 안에서만 수행된다.

5. 양 당사국은 각국의 공기업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효율적 경영 및 기능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제11.22조

협의

1. 경쟁, 소비자 보호, 공기업, 특별한 권리 또는 특혜를 부여받은 기업 및 지정 독점에 관한 사안과 관련하여 양 당사국 간 이해를 증진하거나, 제1절 또는 제2절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협의를 개시한다. 요청 당사국은 자국의 요청에,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안이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시한다.

2.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요청 당사국의 우려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으로 고려하며 그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절의 해석이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논의한다.

3. 협의 대상인 사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비밀이 아니고 특권이 없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따른 협의는 제14장(분쟁해결)에 따른 협의를 구성하지 않는다.

제11.23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14장(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가. 제1절

나. 제11.12조를 제외한 제2절, 또는

다. 제11.21조와 제11.22조"